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(양부남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4531

발의연월일: 2024. 10. 4.

발 의 자:양부남·강유정·권향엽

민병덕 • 박선원 • 박수현

박해철 • 박희승 • 염태영

오세희 • 이성윤 • 이해식

정준호 · 정진욱 · 황정아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개인정보 보호위원회(이하 "보호위원회"라 함)가 공공기관 중 일부를 대상으로 매년 개인정보 보호 정책·업무의 수행 및 현행법에 따른 의무의 준수 여부 등을 평가(이하 "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"라 함)하도록 하고,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그런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침해 예방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제도이므로 평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,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도 그 평가 결과를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.

이에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, 개인정보

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개선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이 그 조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여 개인정보보호수준 평가의 활용도와 실효성을 향상시키고자 함(안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).

법률 제 호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제3항 중 "보호위원회는"을 "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"으로, "공개할 수 있다"를 "공개하여야 한다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"알려야"를 "알리고,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"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 중 "절차및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"를 "절차,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,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·조치 결과의 공개"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의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	제11조의2(개인정보 보호수준 평
가) ①·② (생 략)	가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③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	③ 보호위원회 및 개인정보 보
호수준 평가의 결과를 인터넷	호수준 평가를 받은 공공기관
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<u>공개할</u>	의 장은
<u>수 있다</u> .	
	<u>공개하여야 한다</u> .
④ 보호위원회는 개인정보 보	4
호수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	
수기관 및 그 소속 직원에 대	
하여 포상할 수 있고, 개인정보	
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	
정하면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	
게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. 이	
경우 권고를 받은 공공기관의	
장은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성	
실하게 노력하여야 하며, 그 조	
치 결과를 보호위원회에 <u>알려</u>	알리고,
<u>야</u> 한다.	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
	<u>공개하여야</u>
⑤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수준	⑤
평가의 기준·방법· <u>절차 및</u>	<u>절차, 제2항</u>
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	에 따른 자료 제출의 범위, 제3

령으로 정한다.

<u>위</u>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<u>항 및 제4항에 따른 평가·조</u> <u>치</u> 결과의 공개-----